

시보

| | |
|--------|---------|
| 선 람 | 기 관 의 장 |
| | |

제1118호 2020. 5. 1.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규 칙

- 삼척시 규칙 제595호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 2
- 삼척시 규칙 제596호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2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77호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 5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43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5

| | | | | | | | | | |
|--------|--|--|--|--|--|--|--|--|--|
| 공 람 |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제8회 삼척시 조례규칙심의회(2020.4.20.)에서 의결된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20년 5월 1일

삼척시 규칙 제595호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삼척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 자치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세외수입 포함)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 자치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삼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③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다. 물건의 매입과 그 밖에 1건당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집행

2. 국장

가.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다. 물건의 매입과 그 밖에 1건당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집행

3. 실·과장

가.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

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직무수행경비
- 2. 공공요금
- 3. 제세공과금
- 4. 인건비
- 5. 여비
-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본청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하며, 시의회 및 제1관서는 해당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산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으로서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삼척시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삼척시재무회계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삼척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재무회계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삼척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삼척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4호”를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⑧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삼척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삼척시재무회계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삼척시 공공도서관 열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삼척시재무회계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 삼척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 관직명 | 본 청 | 시의회 | 제1관서 |
|----------------|--|-----------------|---|
| 회계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 - | - |
|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 | 사무과장 | 관서의 장 단,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는 경제건설국장으로 함 |
| 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세외수입주관 및 특별회계담당실·과장 | - | 세입업무담당과장 단,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는 소장으로 함 |
|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 사무과장 |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단,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는 경제건설국장으로 함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소장이 분임재무관) |
|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 | 회계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단,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는 소장으로 함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서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 총괄 재권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 - | - |
| 재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 | 사무과장 | 관서의 장 |
| 총괄 부채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 - | - |
| 부채관리관 | 소관 실·과장 | 사무과장 | 관서의 장 |
| 기금총괄 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 - | - |
| 통합지출관 | 회계과장 | - | - |
| 지출원 | 재무(지출)업무담당 | 의사담당 | 재무(지출)업무담당 |
| 수입금 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담당, 담당, 세외수입주관 업무담당, 특별회계 세입업무담당 | 의사담당 | 세입업무담당 |
| 일상경비 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무(지출)업무담당차 | 재무(지출) 업무담당차 | 재무(지출)업무담당차 |
|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 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 | |

| 관 직 명 | 기타관서·임시관서 | 읍·면·동 | 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
|----------------|--|---|------------------------------------|
| 회계책임관 | - | - | - |
| 징수관 | 관서의 장 | 읍·면·동장 | - |
| 분임징수관 | - | - | - |
| 재 무 관 | - | 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 |
|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 | 소장 |
| 총괄채권관리관 | - | - | - |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읍·면·동장 | - |
| 총괄부채관리관 | - | - | - |
| 부채관리관 | - | - | - |
| 기금총괄관리관 | - | - | - |
| 통합지출관 | - | - | - |
| 지 출 원 | - | 읍·면·동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 |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 세입업무담당 | - |
|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 재무(지출)업무담당(자) |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자) | 서무업무담당자 | 서무업무담당(자) |
|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 | |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제1관서) | 기타관서 |
|---|------|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수산자원센터 문화예술센터 대이동굴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 | |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 대상경비 | 합의대상금액 | 비고 |
|---|---------------|----|
|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 추정금액 200만원 이상 | |
| 2. 물품 제조·구매 | 추정금액 200만원 이상 | |
|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50만원 이상 | |
| 4. 민간위탁경비 | 전체 | |
|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 전체 | |
|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 전체 | |
|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전체 | |
| 8. 기타 경비 | 전체 | |

※ 합의방법 : 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비는 계약관리담당의 합의를 받고, 그 외의 경비는 경리담당의 합의를 받는다.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 대상경비 | 합의대상금액 | 비고 |
|---|--------|----|
| 1. 예산의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 전체 | |
|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전체 | |
|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 전체 | |
|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 전체 | |
|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전체 | |
|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전체 | |
|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 전체 | |
|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 전체 | |
|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조례에 속하는 사항 | 전체 | |

제8회 삼척시 조례규칙심의회(2020.4.20.)에서 의결된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20년 5월 1일

삼척시 규칙 제596호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시설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자금이 라 함은”을 “운전자금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자금이라 함 은”을 “시설자금이란”으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융자추천시기)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주 금요일까지 접 수된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다음 주까지 금융기관에 융자 추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를 각각 “각 호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시 제2020 - 77호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성내1지구, 성북1지구, 임원1지구, 동막1지구)의 측량 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삼척시장

1. 고시내용

가.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동남부지사

나. 사업지구 명칭 : 성내1지구, 성북1지구, 임원1지구, 동막1지구

다. 사업지구 위치 및 면적

- 성내1지구 :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6-13번지 일원 / 24,359㎡
- 성북1지구 : 강원도 삼척시 성북동 94-5번지 일원 / 9,952㎡
- 임원1지구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83번지 일원 / 84,093㎡
- 동막1지구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489-4번지 일원 / 398,693㎡

라. 대행업무 : 사업지구 내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2. 고시일자 및 방법

가. 고시일자 : 2020. 04. 27.

나. 고시방법 : 시보

3. 참고사항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 부서 (☎033-570-3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공고 제2020-43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20.04.27. ~ 2020.05.11.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20.05.12.
- 4. 공고내용

| | | |
|---------------|-------------------------------------|-----|
|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최경○ |
| | 주소 (대장상주소) |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 |
|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리 22 | |
| | 목조/시멘트기와 (1층:55.86㎡ 주택) | |
|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4. 27.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 | | |
|-------------------|-----|------------|
|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2. 당사자 | 성 명 | |
| | 주 소 | |
| 3. 의 견 | | |
| 4.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